

공 탁 법

이천교 법무사

시험문제 답안과 해설 (1책형 기준)

31번 (정답) ②

(해설) ㄱ 압류채권액 합계(1,500만원)보다 피압류채권액 합계(2,000만원)가 크고 전액을 공탁하므로 압류안된 부분관련 피공탁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ㄴ 먼저 송달된 압류법원인 의 채권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한다. ㄷ 압류가 안된 500만원 부분은 변제공탁 회수를 할 수 있다. ㄹ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으로만 지급이 가능하다. ㅁ 아직 압류경합이 아니므로 사유신고하지 않는다.

32번 (정답) ①

(해설) ②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과 을”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대상토지가 갑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갑”이 단독으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③ 자연인이 사망하면 공탁당사자능력도 당연히 소멸하지만,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 ④ 매수인이 매도인(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한 경우 그 매수인은 피공탁자인 매도인으로부터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직접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종중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수용의 개시일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하지 못하였다면 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은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은 명의수탁자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종중이 명의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는 없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중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33번 (정답) ①

(해설) ②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에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본압류를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및 사유신고만으로는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 차단효과도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아니하며, 단순히 가압류 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 주는 의미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신고는 집행법원이 아닌 가압류발령법원에 하여야 하며, 복수의 가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 이후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91조 및 248조 1항에 따라 공탁한 후에 그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 취하 등으로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게 되므로(민집 297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는 가압류발령 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34번 (정답) ①

(해설) ① 저당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므로 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하는 공탁신청이 있으면, 그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35번 (정답) ①

(해설) ① 공탁서 정정은 공탁서 기재와 공탁자 의사와의 불일치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재의 착오가 공탁수리 전에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공탁수리 후의 사정변경으로 공탁서의 기재와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예컨대 공탁 후 피공탁자가 개명을 한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개명사실이 등재된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공탁서 정정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36번 (정답) ④

(해설) ④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

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37번 (정답) ⑤

(해설) 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록 복수의 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①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 ②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를 불문한다)
-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 ④ 선행의 압류(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 ⑤ 금전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38번 (정답) ⑤

(해설) ⑤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제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판 2006. 8. 25. 2005다67476).

39번 (정답) ①

(해설) ①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공탁자는 출급청구할 수 있다.

40번 (정답) ⑤

(해설) 나, 르 시군법원에서는 압류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의 집행공탁이나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291조 및 248조 1항의 집행공탁은 인정되지 않는다.

41번 (정답) ②

(해설) ②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배달증명에 의한 우편발송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상의 서류를 소송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190조에 규정되어 있는 휴일 또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의 집행관 등에 의한 송달방법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공탁통지서를 발송할 수는 없다.

42번 (정답) ③

(해설) ③ 변제공탁의 전자 신청은 액수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탁금 출급·회수청구는 공탁액이 금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43번 (정답) ③

(해설) ③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비고 가상계좌납입신청란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을 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30조 3항 및 제268조)에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 후 “계좌납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44번 (정답) ⑤

(해설) ⑤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즉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45번 (정답) ②

(해설) ① 전자공탁은 일괄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가받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를 분실한 청구인이 공탁물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사실증명신청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발급받은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분실한 공탁물 지급청구서에 의하여 이미 공탁물을 지급한 때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탁통지서를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공탁물출급청구자는 공탁물출급청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규칙 33조 1호

나), 이와 같이 본래 첨부하여야 할 공탁통지서 대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출급 또는 회수하는 것을 승낙지급이라고 한다. 승낙서에는 작성자인 이해관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6번 (정답) ④

(해설) ④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 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급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회생위원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공탁하기 전에 공탁예정통지서를 발송하여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변제액을 공탁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연 1회 변제액을 공탁한다. 공탁금을 출급받으려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 43조에 따라 회생위원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여 공탁금이 회생채권자에게 지급되게 될 것이다.

47번 (정답) ③

(해설) ①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자는 법령상 담보제공의 의무를 지는 자이나, 제3자도 담보제공의무자를 위하여 자기명의로 공탁할 수 있다. 즉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함을 공탁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한 담보공탁은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해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④ 공탁관은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을 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같다)를 한 경우에도 공탁물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에, 피공탁자는 공탁금출급청구서와 함께 질권(담보권) 실행을 위한 압류명령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담보권실행의 신청을 할 때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므로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⑤ 가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상소심의 소송절차에서 담보제공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다고 보므로,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항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고, 그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야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다.

48번 (정답) ③

(해설) ③ 공탁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총액은 확정되어 있으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 금액도 다투는 경우에는 다투는 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49번 (정답) ①

(해설) ①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②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로서는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후, 민법 354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273조에서 정한 담보권 존재 증명 서류로서 위 서면을 제출하여 채권에 대한 질권 실행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를 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③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는 파산절차 외에서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⑤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한다.

50번 (정답) ④

(해설) ① 민사본안 재판절차에서 비법인 사단의 실체와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도, 이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사단의 소멸, 사단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사실을 위 판결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는 없을 것이며, 반드시 정관 기타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 2-80). ②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종중의 경우에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은 종중규약에 따라 대표자로 선출된 회의록 등이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인 종중등록증명서는 대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공탁선례 2-136). ③ 변제공탁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⑤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대하여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